

2017대선주권자행동

수 신 구재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

발 신 2017대선주권자행동 (담당: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제 목 제19대 대선 정치활동 및 선거개입 금지 의무 준수 요구서

날 짜 2017. 4. 6. (총 3 쪽)

제19대 대선 정치활동 및 선거개입 금지 의무 준수 요구서

.....

1. 안녕하십니까?
2.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 등의 불법적인 개입이나 영향 없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라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습니다.
4. 귀 단체에 정치활동 및 선거개입 금지 의무를 지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선거의 공정성 확립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2017대선주권자행동

정치활동 및 선거개입 금지 의무를 지켜주십시오

1.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앞당겨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기틀을 바로 세울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2. 모든 유권자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나 영향 없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가 한 선거개입의 진상규명과 처벌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이 조직들의 정치개입과 관변단체들의 정치중립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3.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7조는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그런데 귀 단체는 보수 일간지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정권을 비호하거나 야당을 공격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 등을 관제시위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가 특정 정치 세력의 외곽지원단체로 행동하며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

5. 이번 선거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인만큼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선거에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려는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에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요구서를 발송하고, 국가국정원, 국가보훈처,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를 감시 대상 5개 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이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 의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보창구를 운영하는 등 「관권선거 꼼짝마!」 시민감시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6. 이에 귀 단체에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 해줄 것을 요구 합니다. 끝.